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징수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2. 1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건 설 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징수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건설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정(2022.3.1. 시행)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징수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비대상이며,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2. 10. 4.부터 10. 25.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2. 11. 2.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수면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 안 번 호	00922061
------------	----------

제출년월일: 2022. 11. 04.
제출자: 달서구청장
(건설과장)

1.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정하여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붙임 참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10. 4.~10. 25.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행정규제 심사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5)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6)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 · 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 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 · 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 ·

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방식(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호안(기슭 · 둑 침식 방지시설) ·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 · 사용 [하천 · 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 ·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가. 나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p> <p>나.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 ·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p>
2.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 · 사용	<p>가. 전기사업용수 $m^3/\text{초당}$ 연액 20만원</p> <p>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3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p> $\text{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4} \times \text{관내유속}(m/sec)$ $146^2 \times 60$
3. 흙 · 돌 · 모래 · 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 · 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 · 사용	<p>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 · 돌 · 모래 · 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 · 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5.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 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 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6.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 · 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 · 돌 · 모래 · 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를 가산적용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 · 사용	가. 스케이트장 · 운동장 · 수영장 · 대기장 · 탈의장 · 골프장을 위한 점용 · 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점용 · 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 고

-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 · 사용료 부과 · 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점용 ·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 위 표 제3호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 · 돌 · 모래 · 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 · 시 · 군 · 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 · 시 · 군 · 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장이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 점용료 · 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 점용면적에 1m²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m²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청장이 점용료 · 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 · 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관 계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 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 · 호소(湖沼) · 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 · 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 · 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

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 · 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 · 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 · 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 · 돌 · 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 · 돌 · 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 · 하천 · 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 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⑤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